

전주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1나7323 판결 [구상금 및 손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1나7323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0가단358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김종성

변론종결 2021. 12. 15.

판결선고 2022. 1. 26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. 6. 25. 선고 2020가단3583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가 2019. 1. 2. 망 B(2019. 5. 25. 사망)과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9,305,6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항소취지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‘2. 추가판단’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).

2. 추가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D의 2019. 1. 2.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3,000,000원이 아니라 93,906,233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을가 제16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, D은 제1심에서 2019. 1. 2.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63,000,000원이라고 회신한 반면, 관련사건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8739 사건에서는 위 피담보채무액이

93,906,233원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무액이 93,906,233원이라고 하더라도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인 275,284,650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액인 101,265,634원(=93,906,233원+7,359,401원)을 공제하면 174,019,016원(=275,284,650원-101,265,634원)이 남게 되고, 이러한 공동담보액이 원고의 피보전권리액, 즉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인 69,305,683원을 충분히 초과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창민, 판사 조지환, 판사 나상훈